

서울고등법원 2022. 6. 10 선고 2021나2043850 판결 [구상금 분담금 청구 등]

재판경과

서울고등법원 2022. 6. 10 선고 2021나2043850 판결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10. 14 선고 2021가합520088 판결

전문

원고, 피항소인 재단법인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대륙아주, 담당변호사 김태병

피고, 항소인 주식회사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동인, 담당변호사 김정태

변론종결 2022. 5. 13.

판결선고 2022. 6. 10.

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10. 14. 선고 2021가합520088 판결

주문

1. 피고의 항소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(가지급물반환신청비용 포함)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청구취지, 항소취지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

1. 청구취지

피고는 원고에게 378,512,50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. 10. 14.부터 이 사건 조정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하고,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3.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

가지급물반환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419,630,3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. 11. 4.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, 제1심판결문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일부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(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법정이자 기산일에 대한 제1심의 판단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,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 법원의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,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).

○ 제1심판결문 이유 제5면 제18행부터 제6면 제10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.

『3) 관련 민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 전액(원고

8,103,380,801원, 피고 3,911,798,050원)이 J 등이 원고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여야 할 구상금이라고 주장하였다. 그런데 원고와 피고가 개별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배상액 중 본인 부담 부분을 초과한 금원을 배상하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공동 면책에 사용된 금액의 합계액 중 J 등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은 총 4,155,431,611원(= J 및 그 소속 책임자 2,770,287,742원 + K 및 그 소속 책임자 692,571,935원 + L 및 그 소속 책임자 346,285,967원 + M 및 그 소속 책임자 346,285,967원), J 등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은 총 2,020,954,181원(= J 및 그 소속 책임자 1,347,302,788원 + K 및 그 소속 책임자 336,825,697원 + L 및 그 소속 책임자 168,412,848원 + M 및 그 소속 책임자 168,412,848원)으로 각각 정하여졌다{공동불법행위자가 구상권을 갖기 위하여는 반드시 피해자의 손해 전부를 배상하여야 할 필요는 없으나 자기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배상을 하여야 하는데(대법원 2006. 2. 9. 선고 2005다28426 판결 등 참조), 원고 및 피고가 상해 또는 사망 피해자들에 대한 각각의 손해배상채무 중 본인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한 시점에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위 각 금액을 산정하였다}. 그리고 나머지 금액인 원고 3,947,949,190원(= 8,103,380,801원 - 4,155,431,611원), 피고 1,890,843,869원(= 3,911,798,050원 - 2,020,954,181원) 부분은 J 등의 과실부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손해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금액을 지출한 것으로서 J 등이 공동면책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J 등이 부담하여야 할 구상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였다.』

○ 제1심판결문 이유 제12면 제2행 기재 “(5+ 245/366)” 부분 다음에 “원 미만 버림, 이하 같음”을 추가한다.

2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야 할 것인바,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, 피고의 항소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지영난, 판사 장준아, 판사 이재혁